

2026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2026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중앙경찰학교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2개 분야 총 3,202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3,202	715	213	92	175	37	51	22	10	609	128	140	121	152	137	176	181	196	47
일반	3,112	625	213	92	175	37	51	22	10	609	128	140	121	152	137	176	181	196	47
101경비단(남자)	90	90	-	-	-	-	-	-	-	-	-	-	-	-	-	-	-	-	-

※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시·도경찰청에 원서 접수

2 시험 절차 및 일정

시험 절차		시험 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 접수		2026. 2. 6.(금) ~ 2. 19.(목) 18:00 <14일간>		
1차 시험	필기시험	3. 6.(금)	3. 14.(토)	3. 20.(금) 17:00
2차 시험	신체·체력·적성검사	3. 20.(금)	3. 30.(월) ~ 4. 25.(토)	5. 15.(금)
3차 시험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4. 27.(월) ~ 5. 14.(목)	※ 불합격자는 개별통보
4차 시험	면접시험	5. 15.(금)	5. 18.(월) ~ 6. 16.(화)	6. 19.(금) 17:00

※ 당해 시험 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접수한 시·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

주요 안내사항

□ 순경 공개경쟁채용 남녀통합선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 ▶ '26년부터 순경 공개경쟁채용에서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며, 101경비단(순경)은 기존과 동일하게 남성에 한하여 선발합니다.
- ▶ 성별 평등한 경찰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6년부터 순경 공개 경쟁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최소 15%)가 도입됩니다.
 - ※ 최종선발인원이 5인 이상인 시·도경찰청에 적용되며,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15%를 곱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결정
- ▶ 응시번호는 성별 구분 없이 전 응시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부여됩니다.

□ 순환식 체력검사 전면 시행

- ▶ '26년부터 경찰 채용시험에 '순환식 체력검사'가 전면 시행됩니다.
 - ※ 경찰특공대, 경찰청장기 무도·사격대회와 같이 체력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력경쟁채용 분야는 제외
- ▶ 순환식 체력검사 수행 영상은 경찰청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 <http://www.youtube.com/@경찰청>
- ▶ 순환식 체력검사 중 '방아쇠 당기기' 코스에 사용되는 38권총의 방아쇠 압력을 사전 측정하여, 기준 압력 범위*에 부합하는 38권총을 체력검사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 * (방아쇠 압력 범위) 5kg ±100g(오차범위 200g 이내)
- ▶ 체력검사 50점 만점 중 순환식 체력검사 합격 시 48점을 부여하고,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을 보유한 경우 2·3단은 1점, 4단 이상은 2점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시) 순환식 체력검사 합격하여 48점 기록, 무도 자격증 4단 보유

① 평가점수: 48점 + 무도 자격증 2점 = 50점

② 환산점수: 50점 × 0.5 = 25점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시 반영

※ 최종 합격자 결정 시 체력검사는 25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주요 안내사항

□ 의사상자 등 대상 가점 도입

- ▶ '26년부터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의사상자 등*에 해당하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가점(만점의 3% 또는 5%)을 부여합니다.

* (의사상자 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 행위로 구조를 하다가 사망, 부상을 당한 사람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 의사상자 등 가점 부여는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10인 이상인 시험에 적용하며,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가점을 하나만 선택

□ 채용시험 응시원서 사진 규격 변경

- ▶ 응시원서 사진 제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응시원서의 사진 규격을 국가 신분증 운영 표준 기준인 여권용(3.5cm × 4.5cm) 사진으로 변경합니다.

※ (기존)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 × 4cm) 사진

→ (변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3.5cm × 4.5cm) 사진

□ '26년 경찰 교육계획에 따라 ① 기존 교육기관 외 다른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실시될 수 있으며, ② 채용인원 중 일부는 입교 대기과 ③ 임용 시 인력 수급에 따라 임용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신임교육 기관

- ▶ 중앙경찰학교(충북 충주) 또는 경찰인재개발원(충남 아산)

※ 최종합격자는 신임교육 운영일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중 한 곳으로 입교하게 되며, 동일한 시·도경찰청 합격자들은 분산되지 않고 동일한 교육기관으로 입교 예정

□ 최종합격 발표 이후 신임교육기관 입교일: '26. 9. 13.(일)

※ 입교 일정은 교육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당해 시험 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응시한 시·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입니다.

□ 일정은 기상 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26. 2. 6.(금) ~ 2. 19.(목) 18:00 <14일간>

- 로그인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마감일 18시 정각까지 결제완료 및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원서접수 인정(마감시간 이후 내용 수정 및 접수 불가능)

나. 접수 방법: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

다. 접수 취소 및 응시표 출력 기간

접수 취소 기간	응시표 출력 기간
2. 25.(수) 09:00 ~ 3. 10.(화) 18:00	2. 25.(수) 09:00 ~ 12. 31.(목) 18:00

※ 접수 취소 시 응시수수료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라. 응시수수료: 5,000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응시수수료 이외에 결제수수료(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 소요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 반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응시원서 제출일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이며, 원서접수 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작성 후 스캔하여 업로드 제출

마. 응시원서 사진(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 교체 불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cm×4.5cm) 사진을 업로드
 - 여권 발급 시 적용되는 촬영 규정(이마·귀 노출 등)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으나 본인 식별이 명확히 가능한 사진을 제출
 - ※ △배경 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스냅사진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등록 불가

4 가점 등

구 분	가산 기준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시험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가점을 하나만 선택
의사상자 등	시험 단계별 만점의 3% 또는 5%	
체력검사 무도분야 자격증	최종합격자 결정 시 100점 만점 기준으로 무도분야 자격증(단증)을 제출한 경우 2·3단은 0.5점, 4단 이상은 1점	체력검사 무도분야 자격증(단증) 점수 인정 무도단체 현황 [붙임 14] 참고
<p>※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p>		

5 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기준점수(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3.13.)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획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됨
- 성적 제출 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성명, 생년월일, 한국사 인증번호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함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 [2026. 3. 9.(월) 09:00 ~ 13.(금) 18:00] 내에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등록해야 함
 - ※ 추가 등록 기간 내 성적을 입력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됨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대상 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 '26년부터 TOEFL(ibt) 성적표 점수 체계가 변경될 예정이나, 기존 점수 체계에 따른 점수도 함께 표기되므로 기존 점수체계를 기준으로 등록	IBT 52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550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	Advanced 510점 이상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2021.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2021. 1. 1.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TOEFL은 응시국가 제한 없이 인정, TOEIC은 일본, G-TELP는 미국, TOSEL은 베트남·미얀마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하고,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3.13.)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외국에서 시행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출제방식(신규출제), 문제난이도 수준 등에 있어 국내에서 시행하는 시험과 유사성이 인정되는 시험의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음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을 해야 함

※ 토익 등 검정시험 자체의 유효기간이 만료했고, 사전 등록하지 않아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사전등록 관련

❖ 사전등록 방법

- 토익(TOEIC), 텡스(TEPS), 지텔프(G-TELP):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 사전등록
- 토플(TOEFL), 플렉스(FLEX), 토셀(TOSEL): **recruit@police.go.kr**로 성적표를 이메일 발송 후 **중앙경찰학교 인재선발계(043-870-2306, 2307)**로 연락 필요

❖ 사전등록 시한

- 토익(TOEIC), 텡스(TEPS), 지텔프(G-TELP): 유효기간(2년) 만료 전
- 토플(TOEFL), 플렉스(FLEX), 토셀(TOSEL): 유효기간(2년) 만료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성적표를 **recruit@police.go.kr**로 발송·도착한 경우

❖ 사전등록 유의사항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 사전등록 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성명, 시험일자, 점수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함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이 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됨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 성적 제출 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 성명을 사용해야 함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기간 [2026. 3. 9.(월) 09:00 ~ 13.(금) 18:00] 내에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등록해야 함

※ 추가 등록 기간 내 성적을 입력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됨

6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 결격사유 등

※ 최종시험 예정일(6.16)까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붙임 1]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응시자 중 사면·복권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시험 부정행위로 ‘응시 자격이 제한당한 자’ [붙임 1]

나. 응시 연령(만 나이 예외 규정)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1의3>

응시 연령	해당 생년월일
18세 이상 40세 이하	1985. 1. 1. ~ 2008. 12. 31.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 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기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군복무로 인해 응시연령을 초과하는 응시자는 1차 시험 합격 후 병적증명서 제출	

다. 신체 조건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경찰 채용 신체검사 세부 기준’에 부합한 자 [붙임 2, 붙임 2-1, 붙임 3]
 -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

라.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보유

- 제1종 보통 운전면허는 자동변속기도 응시 가능
- 최종시험예정일(6.16.)까지 유효*한 운전면허 보유 필요
 - * 신규취득의 경우 합격일이 아닌 면허증에 기재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마. 병역: 제한 없음

바. 응시자격요건 등 유효기간

종 류	기 준 일
응시 결격사유 운전면허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마지막 날): '26. 6. 16.(화)
무도 단증	신체·체력·적성검사 종료일: '26. 4. 25.(토)

7 시험 단계별 평가 방법 등

가. 1차 시험(필기시험)

- 일시: 2026. 3. 14.(토) 10:00 ~ 11:40
- 장소: 접수한 시·도경찰청 홈페이지 공고(3. 6.)
- 시험과목
 - (능력검정시험) 한국사, 영어
 - (필수과목) 헌법(20문항 50점), 형사법(40문항 100점), 경찰학(40문항 100점)
- 헌법·형사법·경찰학 시험범위 및 출제 비율

과 목	출 제 비 율
헌 법	기본권 총론·각론 80% 내외,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형사법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증거 각 15% 내외)
경찰학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 문제 및 가답안은 '26. 3. 14.(토) 12:00, 확정 답안은 3. 16.(월) 18:00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자료실(문제 및 정답)에 공지 예정

※ 문제 이의제기는 '26. 3. 14.(토) 12:00 ~ 3. 15.(일) 12:00까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질문과 답변(필기시험 이의제기)에 접수(응시자만 가능)

- **합격자 결정 방법:**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한국사·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필기시험 성적 공개 기간: '26. 3. 24.(화) 09:00 ~ 12. 31.(목) 18:00

- **합격자 선발 예정 인원**

최 종 선발인원	150명이상	100~149명	50~99명	6~49명	5명	4명	3명	2명	1명
필기시험 합격자	150%	160%	170%	180%	10명	9명	8명	6명	3명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시,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 배수를 초과 하더라도 동점자 전원을 합격처리

- **합격자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비 고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무도 단증 사본 등	시·도경찰청에 제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상세)	인터넷*으로 제출

* 1차 합격자 제출서류 중 신원조사와 관련된 서류는 신원조사업무포털 (인터넷 사이트)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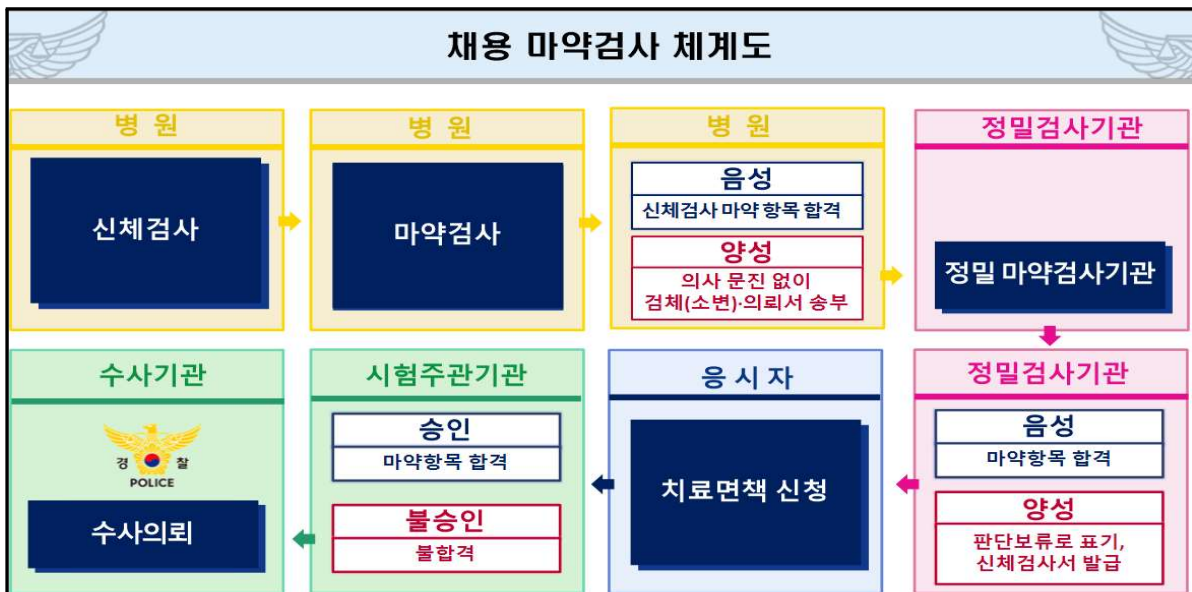
- **답안지 열람**

- (신청·방식) 성적 공개 후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신청, 응시한 시·도경찰청을 방문하여 1인당 10분 이내 답안지 사본 열람
- (일시·장소) 시·도경찰청 청사 내 별도 지정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열람 절차) 본인 확인(신분증) 및 휴대폰·카메라 등 일체 소지품은 별도 보관 조치 후 열람

나. 2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

유형	방법	합격자 결정
신체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 경찰 채용 마약 6종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유효하게 발급받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로 평가 [붙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와 '신체검사 기준표', '신체검사 세부기준' 모두 적격 시 합격
체력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환식 체력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물코스 달리기 ② 장대 허들 넘기 ③ 당기가 밀기 ④ 구조하기 ⑤ 방아쇠 당기기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 [붙임 9] ※ 응시자의 5% 이내를 무작위 선정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 [붙임 11, 붙임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주시간이 4분 40초 이하인 우수 등급 획득 시 합격 ▶다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어느 한 성(性)을 초과하여 합격시키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4분 41초 ~ 5분 10초)에 속하는 해당 성의 응시자 중 완주시간에 따른 선순위자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원과 합산한 후 목표미달인원만큼 합격자 결정
적성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적성검사(총 280문항,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격·불합격 여부는 판정치 않고,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

- (신체검사 병원)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 경찰채용 마약 6종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만 실시 가능 [붙임 5]
- (마약검사 방법) 병원에서 응시자의 소변을 제출받아 실시
 - ※ 경찰채용 마약 6종 검사 관련 안내문 [붙임 7]



-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신체검사서에 기재된 판정일로부터 4월까지이며, 신체·체력·적성검사 종료일(4. 25.)까지 유효해야 함
 ※ '25. 12. 25. 이후 판정받은 신체검사서에 한하여 인정하며,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그 유효기간은 동일함
- (색각이상자) 녹색약과 청색약은 색맹이 아닌 경우 색약정도에 관계 없이 응시 가능하지만 적색약은 약도 색약만 응시 가능
 ※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색각 관련 정밀검사 병원 [붙임 6]
- (순환식 체력검사) '26년부터 경찰 채용시험에 '순환식 체력검사'가 전면 시행되며, '방아쇠 당기기' 코스에 사용되는 38권총의 방아쇠 압력을 사전 측정하여, 기준 압력 범위*에 부합하는 38권총 사용 예정
 * (방아쇠 압력 범위) 5kg ±100g(오차범위 200g 이내)
- (무도 자격증 점수 인정) 순환식 체력검사에서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을 보유한 경우 2·3단은 1점, 4단 이상은 2점의 점수를 부여
 ※ (순환식 체력검사 계산 방법) 50점 만점 = 합격 시 48점 + 무도 자격증 점수
 [예시] 체력검사 합격하여 48점 기록, 무도 자격증 4단 보유 시
 ▶ (순환식 체력검사 평가점수) 48점 + 무도 자격증 2점 = 50점
 ▶ (최종합격자 결정 시 환산점수) 50점 × 0.5 = 25점
- 무도 자격증 점수는 1개의 무도 분야 최대 2점만 인정하며, 2개 이상의 다른 무도 분야 단증을 제출하더라도 가장 높은 단증만 인정
 ※ 특별·명예단증은 불인정, '품' 소지자는 반드시 '단'으로 교체발급 후 제출
- 무도점수 충족 여부 기준일은 신체·체력·적성검사 종료일(4. 25.)
 ※ 체력검사 무도점수 인정 단체 [붙임 14]

다. 3차 시험(응시자격요건 등 심사)

- 시험방법: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응시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 합격자 결정: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고,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격자로 판정하여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라. 4차 시험(면접시험)

- 방법: 개별면접으로 총 25분간 진행(발표면접 10분 + 경험·인성면접 15분)

【 면접시험 진행 절차 흐름도 】

면접 준비		면접 실시		
응시자 교육	① 발표준비	② 발표면접		③ 경험·인성면접
		발표	질의·응답	질의·응답
	20분	3분	7분	15분

- 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이 각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40퍼센트 이상일 경우 합격
 ※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를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

구 분	평 가 요 소	배 점
발표면접	① 상황판단·문제해결 능력 ② 의사소통 능력	각 항목당 10점 (50점 만점)
경험·인성면접	③ 경찰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 ④ 성실성·책임감 ⑤ 협업 역량	

마.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무도분야 자격증 1% 포함), 면접시험 2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7조에 근거하여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의 취업보호대상자 ② 필기시험 성적 ③ 면접시험 성적 ④ 체력검사 성적순으로 선순위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위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8 임용 관련 사항

- 가.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락이 아닌 자 중 최종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 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다. '26년 경찰 교육계획에 따라 ① 기존 교육기관 외 다른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실시될 수 있으며, ② 채용인원 중 일부는 입교 대기과 ③ 임용 시 인력 수급에 따라 **임용 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
- 라. 신임교육 전 ① 병역복무 ② 학업의 계속 ③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질병 ④ 임신·출산 ⑤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임용유예를 한 경우에도 최초 배정계획에 따라 시·도경찰청 배치
- 마. 신임교육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 후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10년간 전보 제한**
- 바.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시·도경찰청 인사규칙에 따라 **기동대 또는 특별경비부서 근무를 해야 함**
- 사. 101경비단 채용인원은 특별경비부서 근무 적격여부 심사에 따라 **101경비단 또는 각 경찰서에서 근무할 수 있음**
- 아. 임용유예·채용인원 미달 등이 발생한 경우 **결원·치안수요 등에 따라 일부 지역에 미배치될 수 있음**

9 기타 사항

- 신임교육 기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비 수사경과자’**를 선발하여 실습기간 중 전문 수사교육을 실시하며,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6개월 근무 후 수사부서에 우선적으로 근무할 수 있음
※ 순경 임용 시 일반경과 부여, 수사부서 전입 및 임용일 기준 1년 경과 시 도래하는 정기 수사경과 선발·해제 계획에 맞춰 수사경과 부여

응시자 참고 및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가.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체력검사 도핑테스트 비정상 분석 결과자 등)를 한 자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제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붙임 1] 참조

나. 체력검사 시 반영되는 무도 자격증(단증)은 적성검사일(4. 25.)까지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자격증(단증)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록은 반드시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단계별 시험 당일 응시표와 신분증(하단의 인정·불인정 신분증 참고)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갱신기간 만료 전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 기간만료 전 여권*

* 신형·구형 불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불가. 다만, 여권정보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를 함께 소지한 경우에만 인정

▶ **(불인정 신분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만 소지한 경우, 갱신기간 경과한 운전면허증

* 모바일 신분증은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에서 현출되므로 인정 불가

- 마. 시험일정 등 관련 정보는 응시한 시·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모든 시험은 응시한 시·도경찰청(응시번호별)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 응시불가)
- 사. 공고한 시험일시·장소에 늦게 도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 바랍니다.
- 아. 시험장 내 소란을 피우는 등 시험에 방해를 주는 행동을 할 경우 감독관은 이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 자. 이 시험계획(일정, 장소 등)은 다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응시한 시·도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갱신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차.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카.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 방법, 시험 일정, 안내 사항, 합격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필기시험 유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교실에 입실 후 본인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의해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붙임 1] 참조

나. 답안카드 기재 및 마킹 시에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은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은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며,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정정하였을 경우 해당 문제의 답을 무효처리합니다.

다.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답안지 교체는 시험종료 전까지 가능하나, 시험종료 타종이 울리면, 답안 작성을 즉시 멈추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속 작성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필기시험 응시자는 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②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③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한 종류 및 관리 절차를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소지·휴대 가능 물품의 종류

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글래스,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반입한 경우 시험 시작 전 반드시 제출
- ▶ 시험 전에 가방 등에 넣은 뒤 시험실 밖(복도 등)에 보관해야 함
- ▶ 시험 시작 후 자진 제출하거나, 소지 확인 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2항제3호(통신·전자기기 소지)로 **부정행위 처리**

②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 시험 중 소지 가능

신분증, 응시표, 개인 필기도구(컴퓨터용 사인펜 등), 수정테이프,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손목시계**, 마스크, 돋보기, 귀마개(이어플러그)

- ▶ 돋보기·귀마개 등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시험실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야 소지·휴대 가능
- ▶ 귀마개는 그 크기가 귓구멍을 막기에 적절한 것만 허용하고, 크기가 과도한 경우는 불허하며, 형태는 스펀지 형태로 된 것에 한함
- ▶ 귀마개 착용으로 인해 시험감독관의 종료시간 예고, 타종 소리 등을 듣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③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 시험장 반입은 허용하나 시험 중 휴대 금지 물품

문제집·기본서·요약집·노트·법전·연습장 등 수험자료 일체, 모자, 방석, 무릎담요, 커블 체어, **아날로그 탁상시계***

* 알람이 있는 경우가 많아 시험 방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입 금지

- ▶ 시험 시작 전 가방 등에 넣은 뒤 시험실 밖(복도 등)에 보관해야 함
- ▶ 시험 시작 후 자진 제출하거나, 소지 확인 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2항제4호(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로 **부정행위 처리**

※ 위 물품 외 기타 소지품은 감독관 판단하에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경우 제한 가능

- 크기가 작은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소지·휴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 바.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시험 종료시간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해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① 전원 OFF → ② 개인 가방에 집어 넣기 → ③ 가방을 복도 밖에 적치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전원을 OFF 하지 않아 시험 도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서 벨·알람·진동 등이 있는 때에는 확인 과정을 거쳐 특이사항이 존재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 아.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멀티펜 등 필기구로 인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자. 답안지 배부가 시작된 이후에는 시험장 건물 현관 출입구가 폐쇄되며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차. 시험시간 중에는 1회에 한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의 사용 원칙과 절차 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사용 원칙과 절차

<사용 원칙>

1. 사용 시간: 10:30 ~ 11:20(시험시작 30분 이후 ~ 시험종료 20분 전)
※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
2. 사용 횟수: 1인당 1회에 한함

<사용 절차> (소음 주의)

1. 시험 중 손을 들어 화장실 사용 요청
※ 화장실 사용자가 많은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2. 문제지와 답안지를 뒤집은 후 복도로 이동, 복도감독관과 동행하여 이동
3. 응시자 소지품 검사(동성 복도감독관이 실시)
 - ① 주머니를 뒤집어 감독관에게 보여 줌
 - ② 휴대용스캐너(MD)를 이용하여 전자기기 검사 실시
4. 복도감독관이 지정한 화장실 및 용변 칸 사용
5. 화장실 사용 후 복도감독관이 소지품 검사 재실시
6. 복도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시험실 입실

<유의 사항>

1. 사용 시간대 외 및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화장실 사용 시 재입실 불가(관리본부 대기)
2. 시험 관련 자료 등 소지, 화장실 내 시험 관련 내용 기재 등의 경우 부정행위로 적발
3.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은 본인 좌석에서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11:20:59에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경우 화장실 사용 및 재입실 가능

카.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해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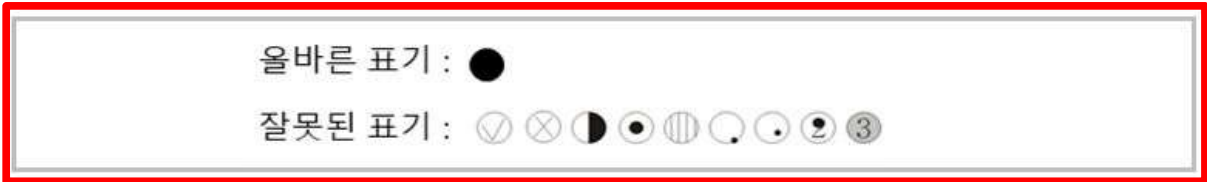
시험 중 퇴실 시 조치

- 가. 응시자는 답안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무단 이탈한 응시자는 이탈 시점부터 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당해 시험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
- 나. 화장실을 허용된 사용 시간대가 아님에도 사용하거나, 사용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시험실에 재입실할 수 없고,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상태로 시험관리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다. 필기시험이 진행되는 도중 시험실을 퇴실하였더라도 긴급 병원후송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시험장(학교 등) 밖으로 퇴거할 수 없으며, 외부연락 차단된 상태로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답안지 기재 및 표기

가. 득점은 채점 기계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합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 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반드시 아래의 ‘올바른 표기’ 예시대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얇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답란의 테두리선 밖을 넘어 주변 답란 가까이 까지 표기한 경우 등 올바른 표기 방식을 따르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색깔 및 표기된 형태·크기와 상관없이 답안지에 표기가 되어 있어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해당란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제공 받은 수정테이프만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시험 중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등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정정하였을 경우 해당 문제의 답을 무효 처리합니다.

체력검사 유의사항

- 가. 금지약물의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고자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 나.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다. 체력검사 시 부상 방지를 위해, 시험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검사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경찰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라. 체력검사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모든 종목에서 붕대·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스트랩·아대·모자·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경우에는 차년도 시험 응시를 권합니다. 뼈가 골절되거나 금이 간 경우에도 붕대 감기·테이핑만 가능합니다.
- 바. 체력검사 중 바닥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스파이크 착용은 불가능하며, 장갑이나 손미끄럼방지 가루(탄산마그네슘가루)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사. 체력검사 중 관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안내사항을 듣지 못해 불이익이 생긴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정확한 파울 관정 등 공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 촬영 영상은 △시험 규정 위반에 대한 확인 △이의제기 신청시 재판정 △장비 오작동·고장 시 기록 측정 등의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신체검사 유의사항

- 가.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나.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 경찰채용 마약 6종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만 신체검사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체검사서(의사소견서 포함)는 적성검사 종료일(4. 25.)까지 유효해야 하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가능 병원은 [붙임 5] 참조
- 다. 응시자 본인이 직접 검사 예약한 후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지를 정해진 기일 내에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시 신분증 및 응시표, 사진, 검사비용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라. 몸에 부착된 테이핑은 신체검사 전에 제거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마. 색각 이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색각경검사(일명 아노말로스코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가능 병원에 방문하여 신체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색각경검사 가능병원 [붙임 6]
- 바. 신체검사의 적격성 확인을 위해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 문신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서 판정보류를 받거나 문신을 자진 신고한 응시자는 신체·적성검사 당일 사전조사서(사진 촬영 포함) 작성 후 외부위원을 포함한 ‘신체검사 심사위원회’(별도 일시 지정)를 구성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아.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한 병원의 압인 또는 계인, 담당의사 및 검진기관의 장의 서명 또는 인장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자.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한 병원에서 봉인상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임의 개봉 시 불인정)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 관련 유의사항

가. 가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 행위로 구조를 하다가 사망, 부상을 당한 사람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필기시험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점이 부여되지 않고, 이후 단계별 시험마다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점 적용은 채용분야 시·도경찰청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명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점은 원칙적으로 원서접수 기간 내에 보훈·의사상증 번호 및 가점비율을 정확히 입력해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서접수 시 입력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5. 3. 9.(월) 09:00 ~ 13.(금) 18:00]까지 반드시 입력(수정)을 완료해야 됩니다.

※ 보훈·의사상증 번호 및 가점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대상자, 임용결격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응시한 시·도경찰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경찰청 교육계 (02) 700-2600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1(내자동)
- 부산경찰청 교육계 (051) 899-2332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999
- 대구경찰청 교육계 (053) 804-2432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227
- 인천경찰청 교육계 (032) 455-2232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9
- 광주경찰청 교육계 (062) 609-2635 광주시 광산구 용아로 112
- 대전경찰청 교육계 (042) 609-2432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77
- 울산경찰청 교육계 (052) 210-2333 울산시 중구 성안로 112(성안동)
- 세종경찰청 교육계 (044) 559-2432 세종시 한누리대로 1978
- 경기남부경찰청 교육계 (031) 888-243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 경기북부경찰청 교육계 (031) 961-2432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23번길 22-49
- 강원경찰청 교육계 (033) 248-043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
- 충북경찰청 교육계 (043) 240-2432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 충남경찰청 교육계 (041) 336-2132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 전북경찰청 교육계 (063) 280-832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 전남경찰청 교육계 (061) 289-2635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359번길 28
- 경북경찰청 교육계 (054) 824-3432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검무로77
- 경남경찰청 교육계 (055) 233-243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
- 제주경찰청 교육계 (064) 798-3232 제주 제주시 수목원서길 37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무효 처리기준으로 공고한 행위

- 답안지 배부가 시작된 이후(09:40:01부터) 해당 시험장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 시험 중 시험실에서 무단퇴실한 행위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별표5]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 (色覺)	<p>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 약도는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p> <p>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색맹 또는 색약(色弱, 약도는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p> <p>1) 영 별표 1에 따른 감식 부분에 근무할 사람에 대한 신규채용시험</p> <p>2) 경찰특공대에 근무할 사람에 대한 신규채용시험</p>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사시 (斜視)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p>[비고]</p> <p>1. 위 표의 "체격" 항목 중 "약물검사", "직무에 적합한 신체"와 "문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p> <p>2. 위 표의 "색각" 검사 시 응시자는 색각 교정 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p>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자격 제한)

붙임 2-1**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101경비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제11조 <별표3>

구 분 부분별	신 체 조 건
신 장	170cm 이상이어야 한다.
체 중	60kg 이상이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1.0 이상이어야 한다.(단, 교정시력 불가)

[비고]

위 항목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를 따른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평가 항목	내 용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직무에 적합한 신체	팔다리와 손·발가락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경찰 장비 및 장구 사용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척추만곡증 (허리휘는 증상)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상지관절의 정상 여부	상지 3대 관절(손목·팔꿈치·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시 자연스럽게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하지관절의 정상 여부	하지 3대 관절(발목·무릎·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안정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약물 검사	약물(마약류) 종류	필로폰(MA), 대마(THC), 케타민(Ketamine), 엑스터시(MDMA), 코카인(COC), 아편(OPI)의 검출	
문신	내용	혐오성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음란성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차별성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
		기 타	범죄단체 상징 및 범죄를 야기·도발할 수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노출 여부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성하복 포함)을 착용하였을 경우 외부에 노출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 (얼굴, 목, 팔, 다리 등 포함)	

[비고]

위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앞쪽)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시험실시기관	②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 명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흉 위 [특수부서 채용시 측정]	cm
(교정)시력 [특수부서 채용시 나안 측정]	좌:() 우:()	색 각	청 력 좌: db 우: db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 장 / 비 뇨 기 계 질 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 골 격 계 질 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 부 X 선 검 사	
직무에 적합한 신체		사 시	
문 신			

약 물 검 사

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	----	-----	------	-----	----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 격	합격 사유
합격 여부	[]판 정 보 류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4월
------	----------

210mm×297mm[백상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①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경찰청, 서울경찰청, 경찰대학 등)
 - 나. ②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순경 공채, 경위 공채, 경장 경채 등)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결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나안(裸眼)과 흉위(가슴둘레)는 특수부서 채용 시에만 측정합니다.
3.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4.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5.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1	경희의료원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회기동)	02-958-8988	
2	경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가락동)	02-3400-1802	
3	상계백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42, (상계동)	02-950-1156	
4	미즈메디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95, (내발산동)	1588-2701	
5	부민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89, (등촌동)	1577-7582	
6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신내동)	02-2276-7158	
7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신대방동)	1577-0075	
8	성애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길 22, (신길동)	02-840-7383	
9	씨엠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6길 13, (영등포동4가)	070-4698-7888	
10	청구성심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73, (갈현동)	02-350-3281	
11	동신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72, (홍은동)	02-396-9161	
12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신림동)	02-1877-8875	
13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60, (마곡동)	02-6986-2330	
14	원자력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공릉동)	02-970-2114	
15	희명병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44, (시흥동)	02-6712-0133	
16	동부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 (용두동)	02-920-9348	
17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 (암남동)	051-990-6697	
18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대신동3가)	051-240-5310	
19	대동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187, (명륜동)	051-550-9300	
20	동래봉생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연로109번길 27, (안락동)	051-520-5850	
21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051-607-2179	
22	영도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대교동2가)	051-419-7746	
23	온종합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19, (당감동)	051-607-0784	
24	좋은강안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남천동)	051-610-9865 051-610-9873	
25	부민병원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59, (덕천동)	051-330-3078	
26	해운대부민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84, (우동)	051-602-8130	
27	해동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33, (봉래동3가)	051-410-6600	
28	좋은삼선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326, (주례동)	051-310-9587	
29	봉생기념병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01, (좌천동)	051-664-4054	
30	학교법인 춘해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05, (범천동)	051-608-0270~1	
31	학교법인 동의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62, (양정동)	051-850-8763	
32	부산보훈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주례동)	051-601-6219	
33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	051-240-7493	
34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삼덕동2가)	053-200-5791
35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명동)	053-650-3534
36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대명동)		053-620-3180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37	천주성삼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신매동)	053-790-1000
38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신당동)	053-258-4171
39	나사렛종합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97, (진천동)	053-643-3800
40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 (읍내동)	053-320-2500
41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중리동)	053-560-7387
42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 (신암동)	053-1688-7770
43	드림종합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153, (대명동)	053-640-8800
44	대구보훈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 (도원동)	053-630-7094
45	나사렛국제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98, (동춘동)	032-899-9999
46	부평세림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75, (청천동)	032-524-0591
47	비에스종합병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31-0	032-290-0321
48	인천사랑병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26-0	032-457-2000
49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217	032-580-6000
50	인천세종병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20, (작전동)	032-240-8000
51	인천적십자병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032-899-4000
52	인천힘찬종합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72-0	032-1899-2220
53	현대유비스병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503-0	032-888-7575
54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부평동)	032-280-6055
55	KS병원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220, (수완동)	062-975-9314
56	광주기독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37, (양림동)	062-650-5572
57	광주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139번길 51, (두암동)	062-260-7356
58	광주보훈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산월동)	062-602-6301
59	광주센트럴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6-0, (신가동)	062-950-9797
60	광주일곡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309, (일곡동)	062-608-7575
61	광주한국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223, (쌍촌동)	062-380-3050
62	상무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81-7, (치평동)	062-600-7224
63	서광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59번길 6, (금호동)	062-600-8060
64	운암한국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91, (운암동)	062-608-8232
65	건양대학교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관저동)	042-600-9999
66	대전한국병원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2	042-606-1450
67	대전성모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64, (대흥동)	042-220-9896
68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둔산동)	042-611-3763
69	대전보훈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82번길 147, (신탄진동)	042-939-0427
70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1599-7123(3번)
71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울산광역시 동구 대학병원로 25, (전하동)	052-250-8340
72	서울산보람병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중평로 53,	052-255-7145
73	울산병원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신정동)	052-259-5264
74	울산엘리아병원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85, (호계동)	052-290-2230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75	동강병원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39, (태화동)	052-241-1471
76	동천동강병원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큰길 215, (남외동)	052-702-3550
77	울산시티병원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7, (연암동)	052-280-9200
78	좋은삼정병원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51, (무거동)	052-220-7679
79	중앙병원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72, (신정동)	052-226-1886
80	엔케이세종병원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61, (나성동)	044-850-7700
81	고대의대부속안산병원	경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고잔동)	031-412-4296
82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원천동)	1688-2118(2번)
83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지동)	031-249-8249
84	강남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11, (신갈동)	031-300-0123
85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정자동)	031-888-0786
86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95, (당왕동)	031-8046-5131
87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42, (관고동)	031-630-4259
88	광명성애병원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36, (철산동)	02-2680-7385
89	뉴대성병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91, (심곡동)	032-610-1165
90	대아의료재단한도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 (선부동)	031-8040-1339
91	성남시의료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 (태평동)	031-738-7007
92	성남중앙병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12, (금광동)	031-799-5550, 5551
93	안성성모병원		경기도 안성시 시장길 58, (서인동)	031-675-6007
94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1, (산본동)	031-390-2741, 2725, 2726
95	시화병원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381, (정왕동)	031-5189-0293
96	동수원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우만동)	031-210-0285
97	화홍병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90번길 98, (호매실동)	031-8021-6858
98	단원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20, (초지동)	031-8040-5860
99	다니엘종합병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61, (약대동)	032-670-0230
100	굿모닝병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38, (합정동)	031-5182-7649
101	김포우리병원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1, (걸포동)	031-999-1345
102	뉴고려병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 (장기동)	031-980-9114
103	사랑의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69, (성포동)	031-8084-0918
104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일동)	031-500-1182
105	메트로병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33번길 8, (안양동)	031-467-9984
106	조은오산병원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307, (오산동)	031-373-1806
107	차의과학대분당차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야탑동)	031-780-5050
108	안양샘병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9, (안양동)	031-463-4386
109	지샘병원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91, (당동)	031-389-3446
110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금오동)	031-820-5334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111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동)	031-828-5000
112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48, (신읍동)	031-539-9114
113	의정부백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322, (신곡동)	031-856-8111
114	현대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21, (진접읍)	031-528-9117
115	연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로 20-0, (일산동)	033-741-1670
116	강원대학교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56, (효자동)	033-258-2000
117	강릉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007, (남문동)	033-610-1281
118	속초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3, (영랑동)	033-630-6109
119	영월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9, (영월읍)	033-370-9124
120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하평로 11, (평릉동)	033-530-3100
121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드미길 8, (장성동)	033-580-3151
122	강릉고려병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가로 30	033-649-0206
123	충북대학교병원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0	043-269-6566
124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82-0	043-840-8401
125	중앙제일병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로 36-0	043-533-1719
126	제천서울병원		충청북도 제천시 송문로 57-0	043-642-7725
127	효성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16-0	043-225-8522
128	옥천성모병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195-0	043-730-7072
129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0	043-249-2210
130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로 239-50	043-871-0246
131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안서동)	041-550-6789
132	서산중앙병원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산업로 5, (수석동)	041-661-1063
133	의료법인 백제병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4번길 14, (취암동)	041-730-8985~6
134	보령아산병원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136, (죽정동)	041-930-5555
135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77, (웅진동)	041-962-1231
136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석림동)	041-689-7000
137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홍성읍)	041-630-6177
138	대자인병원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우아동가)	063-240-2000
139	동군산병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49, (조촌동)	063-440-0300
140	전주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길 13, (중화신동가)	063-220-7200
141	익산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969, (신동)	063-840-9114
142	정읍아산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606-22, (용계동)	063-530-6000
143	예수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중화신동가)	063-230-8114
144	군산의료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의료원로 27, (지곡동)	063-472-5000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145	남원의료원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충정로 365, (고죽동)	063-620-1114
146	전주고려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67, (산정동)	063-240-7300
147	광양사랑병원	전남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71, (중동)	061-797-7240
148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1길 24, (조례동)	061-720-7133
149	나주종합병원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로 5419, 나주종합병원	061-330-6136
150	목포시의료원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용해동)	061-260-6472
151	빛가람종합병원		전라남도 나주시 정보하길 49-0, (빛가람동)	061-820-0855
152	여수전남병원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49, (광무동)	061-640-7157
153	여천전남병원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95, (선원동)	061-690-6284
154	영광종합병원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 (영광읍)	061-350-8196
155	영광기독병원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65, (영광읍)	061-350-3038
156	무안병원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65, (무안읍)	061-450-3134
157	목포중앙병원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23, (석현동)	061-280-3129
158	순천제일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기적의도서관1길 3, (조례동)	061-720-3406
159	세안종합병원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795-2, (연산동)	061-260-6600
160	해남종합병원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 (해남읍)	061-530-0131
161	광양서울병원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 93, (마동)	061-798-9896
162	해남우리종합병원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97, (옥천면)	061-530-7171
163	목포한국병원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83, (상동)	061-270-5448
164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북문동)	054-850-6000
165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용흥동)	054-247-0551
166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모암동)	054-429-8114
167	동국대의과대학경주병원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석장동)	054-748-9300
168	상주적십자병원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로 53, (남성동)	054-534-3501
169	안동성소병원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99, (금곡동)	054-850-8114
170	영주적십자병원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327-0, (가흥동)	054-630-0100
171	김천제일병원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1길 12, (신음동)	054-420-9300
172	문경제일병원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3길 25, (모전동)	054-550-7700
173	상주성모병원		경상북도 상주시 냉림서성길 7, (냉림동)	054-532-5001
174	의료법인 안동병원		경상북도 안동시 양실로 11, (수상동)	054-840-1004
175	포항세명기독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대도동)	054-275-0005
176	차의과학대학부속구미치병원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10길 12, (형곡동)	054-450-9700
177	포항성모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대잠동)	054-272-0151
178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물금읍)
179	강일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359, (구산동)		055-822-0100
180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중앙동)		055-280-7619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181	베데스다복음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로 28, (신기동)	055-384-9901
182	연세에스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32번길 13, (이동)	055-548-7700
183	의료법인 거봉 백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5길 14, (상동동)	055-733-0000
184	맑은샘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거제대로 4477, (연초면)	055-731-1240
185	갑을장유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167-13, (부곡동)	055-310-6000
186	김해복음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33, (삼정동)	055-330-8888
187	청아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서로 67	055-230-1500
188	에스엠지연세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76, (월남동2가)	055-243-0100
189	조은금강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 (삼계동)	055-330-0300
190	제일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5, (강남동)	055-750-7123
191	진주고려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 (칠암동)	055-751-2500
192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성주동)	055-214-2000
193	창원파티마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명서동)	055-270-1000
194	창원한마음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사림동)	055-225-0000
195	한일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17, (충무공동)	055-759-7777
196	마산의료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055-249-1234
197	중앙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0	064-786-7280
198	한국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 (삼도일동)	064-750-0720
199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아라일동)	064-717-1580
200	서귀포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동홍동)	064-730-3465
201	제주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연동)	064-740-5359

- 색각경(아노말로스코프) 검사 가능 병원: 8개소

연번	병원명	주 소	전화번호
1	경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02-3400-1269
2	공안과 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37길 45	02-480-5000
3	공안과 의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02-733-5111
4	바른눈서울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02-6203-3377
5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032-890-2114
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길 82	031-787-2114
7	정근안과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67	051-668-8000
8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1899-0000

- 색각 이상자의 경우, 위 병원에서 색각경검사(일명 아노말로스코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가능 병원(201개소)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또한, 위에 명시한 의료기관 외에 색각경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색각 관련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류 정밀검사 시행안내

- 경찰공무원은 마약수사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이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므로 마약 복용은 금지되며, 채용시험 실시 기관장은 채용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마약류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표1 관련, 필로폰(MA), 대마(THC), 케타민(Ketamine), 엑스터시(MDMA), 코카인(COC), 아편(OPI)의 복용은 금지됩니다.
- 마약류 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 정밀검사 대상자 선정방식

- 마약진단키트를 이용하여 응시자의 소변을 간이검사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

□ 정밀검사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는 곧바로 병원 또는 임상검사 전문기관에서 간이검사가 실시되며, 간이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정밀검사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 정밀검사 결과는 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통보받은 후 10일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실시 기관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 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정밀검사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보 받은날로부터 1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마약 간이검사 시 기침약 등으로 인해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양성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검사 전 치료용 약물 복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병원 **신체 검사 시 정밀 마약검사 의뢰에 동의**하여야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밀 마약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으나, 응시자가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면책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진단증빙자료(진단서,처방전,소견서등)를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type="checkbox"/> 기간(주/월) _____
--------------------------------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 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제출해야 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34조의2제2항제2호 관련

1. 평가종목

순환식 체력검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4.2킬로그램의 조끼를 착용하고 다음 각 목의 종목을 연이어 수행한 후 그 완주시간을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그림 참조).

가. "장애물코스 달리기"는 매트(1.5미터 길이) 넘기, 허들(0.6미터 높이) 넘기, 계단 오르내리기(5단 계단), 장벽(1.5미터 높이) 넘기(2회 순환 시에만 수행)로 구성된 코스를 6회 반복하여 총 340미터를 달리는 종목

나. "장대 허들 넘기"는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 장대 허들(0.9미터 높이)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뒤로 눕기를 3회 반복하는 종목

다. "당기기·밀기"는 신체저항성 기구(32킬로그램)를 각각 당긴 상태와 밀 상태로 반원을 그리면서 이동하기를 각각 3회 수행하는 종목

라. "구조하기"는 모형인형(72킬로그램)을 잡고 당겨서 10.7미터 거리를 이동시키는 종목

마. "방아쇠당기기"는 원형으로 구멍(지름 23센티미터)이 뚫려있는 전방 구조물의 원안에 총구를 넣고 주로 사용하는 손은 16회, 반대쪽 손은 15회씩 방아쇠를 당기는 종목

2. 평가기준

제1호 각 목에 따른 종목의 완주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 등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완주시간은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초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한다.

가. 완주시간이 4분 40초 이하인 경우: 우수 등급

나. 완주시간이 4분 40초를 초과하고 5분 10초 이하인 경우: 보통 등급

다. 완주시간이 5분 10초를 초과한 경우: 미흡 등급

3.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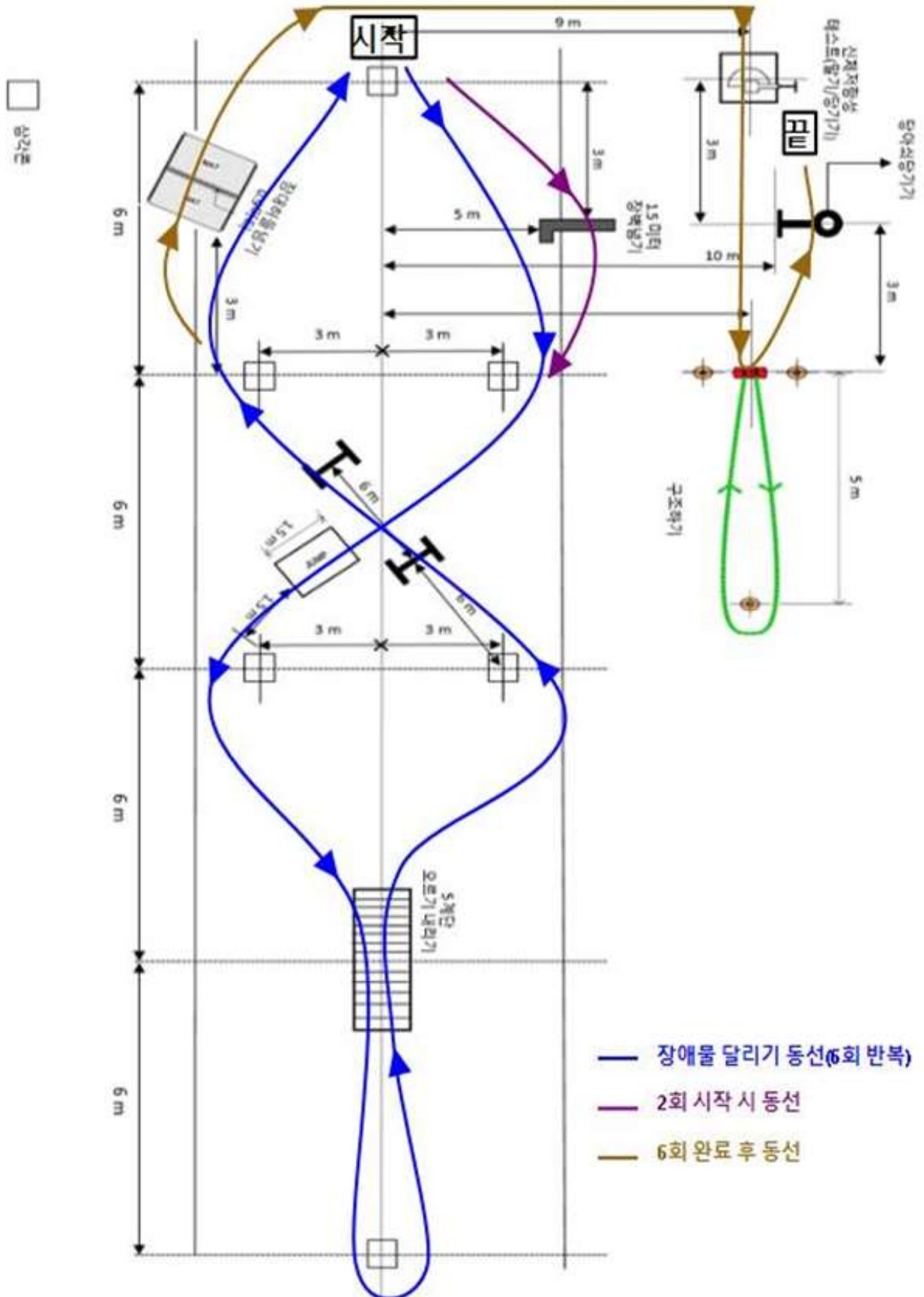
가. 제2호 각 목의 평가등급에 따른 합격 여부는 다음 1)과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영 제43조의3에 따라 어느 한 성(性)을 초과하여 합격시키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에 속하는 해당 성의 응시자 중 완주시간에 따른 선순위자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원과 합산한 후 해당 성의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우수 등급을 받은 사람: 합격

2) 보통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사람: 불합격

나. 그 밖에 체력검사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그림] 순환식 체력검사 수행 동선



4. 측정 및 수행 방법

<p>장애물코스 달리기 (340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자형으로 설치된 콘을 따라서 이동하며, 콘을 건드린 경우 콘을 원상태로 둔 후 진행 · 매트(1.5m) 넘기의 경우 매트를 넘지 못하거나 라인을 밟으면 안되며, 성공할 때까지 매트 넘기 다시 진행 ※ 매트 양 옆에 설치된 접시 콘을 건드린 경우 매트를 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파울로 판정 · 계단 오르기(5단)는 한발에 1계단씩 오르내리고 2계단 이상 오르내리면 안되며, 성공할 때까지 계단오르기 다시 진행 ※ 2계단씩 올라간 경우 바닥으로 내려와서 다시 진행, 2계단씩 내려간 경우 계단 정상에서 다시 진행 · 허들 넘기(0.6m)의 경우 장애물 바를 떨어뜨리지 않고 뛰어넘으며 바가 떨어질 경우 원래 상태로 정위치 한 후 성공할 때까지 첫번째 장애물 바로 돌아와 다시 진행 · 장벽 넘기(1.5m)는 1회 코스 완료 후 2회 코스 시작 전 1회만 넘으면 되고 장벽의 밑과 옆의 방지 턱을 이용하여 넘어서는 안되며, 성공할 때까지 장벽넘기 다시 진행
<p>장대허들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엎드렸다가 일어나 장대 허들(0.9m)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뒤로 눕기'를 3회 왕복 ※ 장대허들을 넘을 때는 '손'과 '발'만 이용하며, 다른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넘는 경우 해당 동작부터 다시 진행 · 엎드릴 시 가슴·어깨·앞쪽 허벅지, 뒤로 누울 시 어깨·등 전체· 엉덩이·뒤쪽 허벅지가 정확히 바닥에 닿아야 횡수로 인정되며, 감독관이 왕복 3회를 인정할 때까지 계속 진행
<p>당기기·밀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제작된 신체 저항성 기구(32Kg)를 완전히 당기거나 민 상태로 반원(180도)을 그리면서 이동하며, 순서는 당기기부터 3회 실시한 후 연이어 밀기 3회 실시 · 당기고 미는 도중에 신체 저항성 기구에 빨간색이 표시되면 실패로 처리되고 해당 동작(밀기를 실패했다면 밀기부터)을 다시 진행 · 해당 동작을 각각 3회 연속으로 수행해야 성공으로 인정 ※ 당기기·밀기 기구 하단에 발을 대고 수행하는 것은 파울로 판정
<p>구조하기</p>	<p>모형 인형(72kg)에 설치된 줄을 잡고 10.7m 거리를 당겨서 모형 인형 전체가 도착 라인 안으로 들어와야 성공으로 인정</p> <p>※ ① 모형 인형은 두 손으로 끌며 ② 직선구간 이동 시 바닥 매트 안에서 진행 ③ 반환선 통과 시 반환점(콘) 바깥쪽으로 회전하며 위반 시 해당 지점부터 다시 진행</p>
<p>방아쇠당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경 23cm의 원 안에 권총을 넣고 방아쇠 당기기를 주 사용손부터 16회 실시한 후 연이어 반대손 15회 실시 ※ 두 손 또는 두 손가락을 사용하거나 팔꿈치를 구부려 옆구리에 붙여 격발하는 경우 해당 손 처음부터 다시 진행 · 원 안으로 총구가 들어가지 않거나 구조물에 닿을 경우 해당 손의 기록은 무효 처리되며, 해당 손부터 재측정을 진행하여 감독관이 인정할 때까지 진행

※ 비고

- 측정 감독관이 종목별로 다음 단계 진행이 어렵다고 판정(응시자 측정 포기, 부상을 당한 경우, 진행시간 6분 초과 등)할 경우 실격 처리할 수 있다.
- 기기 오작동·미작동으로 측정기록에 오류 발생 시 재측정 기회 제공
- 기록원(검사관)은 측정요원으로부터 전광판의 기록 또는 초시계의 기록을 전달받아 정확히 기록 및 서명 날인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3(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권자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대상 채용시험 및 채용목표인원) ① 영 제43조의3이 적용되는 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직무분야별 또는 시·도 경찰청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1. 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2. 영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② 제1항의 시험에 적용되는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15퍼센트를 곱한 인원수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4조의2(양성평등채용목표제 합격자 결정) 제3조의2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제2차시험(체력검사)에서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보통" 등급에 속하는 해당 성 응시자 중 빠른 시간 순으로 "우수"등급을 받은 인원수와 합산하여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3차 및 제4차시험(필기시험)에서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목에 따른 득점을 하고 총득점에서 합격선의 -3퍼센트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은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다. 영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시험은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3. 제6차시험(면접시험)에서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는 불합격)을 득점하고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총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로 결정한다.

4. 최종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성적 순으로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목표인원에 달할 때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5. 시험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였더라도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6. 시험단계별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모두 합격자로 한다.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채용시험 실시 기관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6호 관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한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대상자는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채용시험 실시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로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실시 기관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 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를 원서접수 시 하여야 하며, 동의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붙임 13**무도 분야 자격증 점수 기준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3

분야	관련 자격증 및 점수	
	1점	2점
무도	무도 2·3단	무도 4단 이상

1. 무도 분야 자격증 점수 계산

가. 계산 기준

무도분야 자격증 2·3단은 1점을, 4단 이상은 2점으로 계산한다.

나. 자격증 인정 기준

무도 분야 자격증은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대한체육회에 가입한 정회원 또는 준회원 경기단체
- 2)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두고, 각 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이며,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 3)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1)**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8)**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대한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대한킥복싱협회

※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세계태권무도연맹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는 '25. 2. 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 세계합기도협회 △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現대한민국합기도지도자협회) △ 대한검도연합회 △ 한국무예진흥원 △ 세계용무도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회 △ 대한프로태권도협회 △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은 '25. 7. 1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택견보존회

'26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 일반공채(101경비단) -

목 차

- 일반공채(101경비단) -

【 헌 법 】 ----- 00

【 형 사 법 】 ----- 00

【 경 찰 학 】 ----- 00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답안작성 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

분야	시·도	응시 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 5자리)
00 11 22 33 44 55 66 77 88 99	00 11 22 33 44 55 66 77 88 99	000000 111111 222222 333333 444444 555555 666666 777777 888888 999999	000000 111111 222222 333333 444444 555555 666666 777777 888888 999999

※ 사인펜독점 사용
(선필은 전자표 기재하지 않습니다.)

한글성명

Blank area for Korean name.

필적 감정을 기재란
(배시) 위 응시지와 동일함.

Blank area for handwriting practice.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답안지

문번	현 법				형 사 법				경 질 화					
	1	2	3	4	1	2	3	4	1	2	3	4		
1	1	2	3	4	21	1	2	3	4	21	1	2	3	4
2	1	2	3	4	22	1	2	3	4	22	1	2	3	4
3	1	2	3	4	23	1	2	3	4	23	1	2	3	4
4	1	2	3	4	24	1	2	3	4	24	1	2	3	4
5	1	2	3	4	25	1	2	3	4	25	1	2	3	4
6	1	2	3	4	26	1	2	3	4	26	1	2	3	4
7	1	2	3	4	27	1	2	3	4	27	1	2	3	4
8	1	2	3	4	28	1	2	3	4	28	1	2	3	4
9	1	2	3	4	29	1	2	3	4	29	1	2	3	4
10	1	2	3	4	30	1	2	3	4	30	1	2	3	4
11	1	2	3	4	31	1	2	3	4	31	1	2	3	4
12	1	2	3	4	32	1	2	3	4	32	1	2	3	4
13	1	2	3	4	33	1	2	3	4	33	1	2	3	4
14	1	2	3	4	34	1	2	3	4	34	1	2	3	4
15	1	2	3	4	35	1	2	3	4	35	1	2	3	4
16	1	2	3	4	36	1	2	3	4	36	1	2	3	4
17	1	2	3	4	37	1	2	3	4	37	1	2	3	4
18	1	2	3	4	38	1	2	3	4	38	1	2	3	4
19	1	2	3	4	39	1	2	3	4	39	1	2	3	4
20	1	2	3	4	40	1	2	3	4	40	1	2	3	4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